



창업동아리운영규정

제정일	2020. 8.10
개정일	
개정차수	차
담당부서	창업교육센터

-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이하 “본교” 라 한다) 학생들의 융·복합 및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학습활동을 통해 창의적 개발능력과 졸업 후 현장 실무 적응능력을 적극적으로 배양하기 위하여 소그룹 형태의 창업동아리를 구성 및 운영토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정의) 창업동아리라 함은 학생들이 모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신상품, 신기술개발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산업체와 연계하여 신제품 개발참여, 현장실습 등의 기회를 통해 취·창업을 위한 자기설계 직무능력함양을 도모하는 동아리를 말한다.
- 제 3조 (구성) 본교 창업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구성 할 수 있다.
1. 본교 재학생 3인 이상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창업동아리의 지도교수는 동아리별 1인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의 자격 상실은 졸업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 4조 (등록) 창업동아리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동아리 신청서 1부
 2. 창업동아리 운영계획서 1부
 3. 사업계획서(창업아이템 계획서) 1부
 4. 창업동아리 회원명부 1부
 5. 창업동아리 지도교수 의견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 5조 (승인) 창업동아리의 승인은 창업교육센터에 등록 신청 후 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조 (등록 취소 또는 지원 불허) 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등록을 취소 또는 지원을 불허 할 수 있다.
1.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2. 학칙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1년 이상 활동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4. 동아리 활동내용이 설립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5. 불법집회로 인하여 사법적 절차에 계류 중인 경우
 6. 활동보고서 작성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7. 기타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 제 7조 (동아리 지원 범위) 창업동아리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들은 회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를 지원 할 수 있다.
1. 창업동아리실 무료 대관

2.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해 활동목적성 경비, 시제품제작 물품지원, 외부활동 경비 지원
3. 활동운영비는 창업동아리 운영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하며 활동실적 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4. 기타 동아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8조 (활동 참여) 창업동아리는 창업동아리관련 대학 전체 행사 시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교내·외 창업동아리 관련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 9조 (활동 평가 및 결과 보고) 창업동아리 지도교수 및 동아리 대표는 매 학기 말 지정 된 기간에 창업동아리 활동 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활동운영비 집행 정산서를 창업교육센터로 제출하고 활동실적 결과 심사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지도교수) ① 창업동아리의 지도교수는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 1인으로 선정한다.

② 각 동아리에 위촉된 지도교수는 소속 동아리의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하여야 하며, 불성실한 동아리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창업동아리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1조 (변경통보의무) 창업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창업교육센터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승인받은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창업동아리 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요한 창업동아리 운영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2조 (평가위원회) 창업동아리 활동실적 평가는 위원회에서 한다.

제13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